



# FTA ANALYSIS

## 한-베트남 FTA 활용하기

김수정 |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REPORT

# 한-베트남 FTA 활용하기



김수정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 1 우리나라와 베트남 교역동향

베트남은 우리나라 5대 무역국 중 3위국가이며, 인력도 풍부하여 베트남 전체 인구 중 15세~64세 생산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68%에 달한다. 현재는 글로벌 생산기지가 상당부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저임금 노동비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베트남의 양자협정을 2015년 체결하였으며, 양국의 교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FTA 공동작업반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 2021년에는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1) 우리나라와 베트남 교역현황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무역은 2014년부터 지속해 증가하여 2023년 6월에는 무역수지 12,216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 첫 시기에도 한-베트남 교역은 수출이 0.7%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1년과 '22년에도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표 1] 우리나라와 베트남 교역현황(2014~2023.6)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3.06	24,849	-22.1	12,633	-6.5	12,216
2022	60,964	7.5	26,725	11.5	34,239
2021	56,729	16.9	23,966	16.5	32,763
2020	48,511	0.7	20,579	-2.3	27,932
2019	48,178	-0.9	21,072	7.3	27,106
2018	48,622	1.8	19,643	21.4	28,979
2017	47,754	46.3	16,177	29.5	31,577
2016	32,630	17.5	12,495	27.4	20,135
2015	27,771	24.2	9,805	22.7	17,966
2014	22,352	6.0	7,990	11.4	14,361

자료: 한국무역협회

## 2)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2022년 기준 유기발광다이오드의 것, 메모리, 프로세서와 컨트롤러이며, 대부분의 품목이 전자·전기 제품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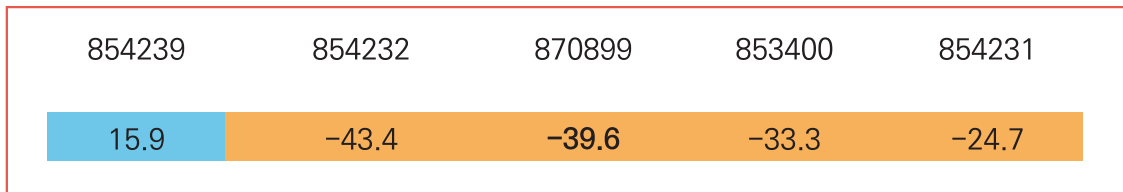
**[표 2]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2022년~2023년 6월)**

[단위: 백만달러, %]

순번	MTI 1단위	HS 코드	품명	2022년		2023년 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60,964	7.5	24,849	-22.1
1	전자전기제품	852412	유기발광다이오드 (오엘이디)의 것	11,774	0.0	4,554	-16.6
2	전자전기제품	854232	메모리	6,952	14.1	2,321	-43.4
3	전자전기제품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sup>1</sup>	5,973	21.2	1,978	-24.7
4	광산물	271019	기타	3,095	246.4	1,530	-12.7
5	전자전기제품	854239	기타	2,125	32.2	1,067	15.9
6	전자전기제품	852990	기타	1,305	-49.9	643	-7.1
7	전자전기제품	853400	인쇄회로	1,519	-9.4	545	-33.3
8	전자전기제품	851779	기타	1,216	0.0	493	-22.7
9	전자전기제품	847989	기타	559	8.7	330	-4.3
10	기계류	870899	기타	801	43.7	236	-39.6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1]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2022년~2023년 6월)**



1 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 3)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은 수출품목과 유사하게 전자전기제품에 분포되어 있다. 제8473.30호는 전년대비 173.9%로 폭증하였으며, 제8444.30호 역시 전년대비 85.2%로 증가한바 있다.

[표 3]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2022년~2023년 6월)

[단위: 백만달러, %]

순번	MTI 1단위	HS 코드	품명	2022년		2023년 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6,725	11.5	12,633	-6.5
1	전자전기제품	851779	기타	2,449	0.0	957	-16.5
2	전자전기제품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671	3.4	794	173.9
3	전자전기제품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sup>2</sup>	1,101	1.3	692	-8.5
4	전자전기제품	851713	스마트폰	1,893	0.0	414	-67.9
5	전자전기제품	852990	기타	604	-30.0	343	18.2
6	전자전기제품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 <sup>3</sup>	430	71.5	342	85.2
7	전자전기제품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88	-1.8	325	-13.2
8	전자전기제품	852492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612	0.0	237	-17.6
9	전자전기제품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440	-1.7	198	-19.2
10	생활용품	640399	기타	300	51.4	191	43.2

자료: 한국무역협회

<sup>2</sup>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sup>3</sup>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그림 2] 우리나라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2022년~2023년 6월)

847330	854430	640399	852990	851713
173.9	85.2	43.2	18.2	-67.9

## 2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2분기 우리나라 FTA 평균 활용률은 74.1%이며, 한-베트남 FTA의 23년 2분기 FTA 활용률은 60.2%를 기록하고 있다.

[표 4] 한-베트남 FTA 활용률

[단위: %]

협정수출국가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2023.2/4)	68.9	71.9	64.2	86.1	91.5	81	89.7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영국
77.2	89.2	96.8	65.3	37	60.2	58.1	74.8

자료: 국가통계포털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섬유 및 의류는 한-아세안과 유사하나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부여했다.



[표 5]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산업	주요 내용
농수산물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中 택일)의 비율 제고 (예: 가당연유, 유당 등)
섬유·의류	대부분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하였으며,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축성 합의(예: 커튼, 모포 등)
기계, 전기·전자	우리의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상 기준보다 더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으로 합의(예: 세탁기, 냉장고 등)
자동차	완성차는 한-아세안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RVC 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가하여 업계 편의 제고 (예: 기어박스, 차축 등)



### 3 한-베트남 FTA 활용시 유의사항

특히 '22년 9월 개정된 한-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서는 제61류와 제62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되었다.



[표 6]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정(제61류, 제62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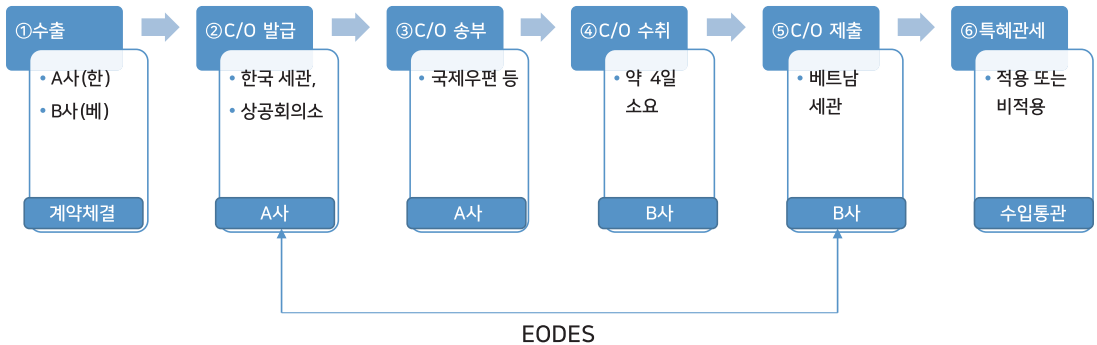
개정전			개정후	
제6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61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2류			62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1 ~ 6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213 ~ 62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215 ~ 62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베트남 FTA는 '22년 8월 1일자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HS 기준연도가 HS 2012에서 HS 2017로 변환되었다. 이에 따라, 한-베트남 FTA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발급신청은 HS 2017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원본 종이를 베트남 현지에서 수입할 시 꼭 필요했으나, 7월 15일부터는 한-베트남 FTA 활용시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면제되었다.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고 있다.

[그림 3] 종이 원산지증명서(C/O)의 국가 간 이동·제출 절차



※ ③ ~ ⑤ 단계에서 배송 시간·비용 소요, 도난 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으나,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교환시 ③ ~ ⑤ 단계가 생략됨**

자료: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관세청 보도자료(06.23)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출자는 베트남 서류 송부비용, 수입 시 특혜세율 적용 절차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산지증명서에 발급기관의 전자서명과 공식 인장 날인, 원산지증명서에 QR코드를 추가하였다.





이미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교역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장이다.

Make in Vietnam은 ICT 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국가ICT산업 진흥 슬로건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전의 FDI 기업으로부터 아웃소싱 및 생산기지로만 사용되는 베트남이 능동적으로 재탄생하기를 원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 우선 분야로 헬스케어, 교육, 금융, 농업, 교통·물류, 에너지, 천연환경 및 환경, 산업제도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현재 기초를 잘 파악한 후 우리나라 기업 역시 한-베트남 FTA를 잘 활용하여 베트남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